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당현수막에 인종차별 등 내용 금지〉

- 손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32호)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33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손솔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손솔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12.
3. 회부연월일 : 2025.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법상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매체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 정당현수막을 통해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령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정당현수막 설치의 경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동별 개수 제한과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여기에 내용에 관하여는 「정당법」에 따르도록 단서를 붙여 정당 현수막에 인종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제8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2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민정의위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의위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9.
3. 회부연월일 : 2025.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그런데 최근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해당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의3 등).

Ⅲ. 검토의견

손솔의원안은 정당 현수막의 내용에 관하여는 「정당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손술의원안
법률 제2087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7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제8조(적용 배제) ① -----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8. ----- ----- ----- ----- ----- ----- -----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에 따르며, 다음----- -----.

현행	손슬의원안
가. ~ 다. (생략) ②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민정의원안은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하고, 위반시에는 시장등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의3 등)

현행	고민정의원안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생략)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u>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u> 6. (생략)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인종·국적·민족·장애·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u> ----- --- 6. (현행과 같음)

현행	고민정의원안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이 제5조제2항제5호의</u> <u>내용을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심의위원회의 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항제3호의 판단기준</u> ----- -.
법률 제2101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01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⑦ <u>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u> <u>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u>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	⑧ ----- -----

현행	고민정의원안
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⑩ (생략) ⑪ 제10항에 따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 -----제9항 및 제10항----- -----. ⑨ -----제8항----- -----. ----- ----- ----- ----- ----- ⑩ -----제9항----- ----- ----- ----- -----.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 제11항----- -----. 제20조(과태료) ① ----- ----- -----.

현행	고민정의원안
1. 1의2. (생략) <u><신설></u> 1의3. (생략) 2. ~ 5. (생략) ②·③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제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u> 1의4.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은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로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인 경우에는 이 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및 제4조에 따른 금지·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당법」 제3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 현수막에 관한 적용배제 규정으로 인하여 혐오나 비방에 관한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혐오나 비방, 모욕 등에 관한 내용을 금지하였으나,²⁾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관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이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으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하 생략)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하 생략)

2) 류수현 기자,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전국 확산...현수막 공해 사라지나, 2023.10.22., 2025.11.03. 최종확인, 한국일보.

므로 혐오·비방의 내용이나 문구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음.³⁾

이후 정당 현수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하여 관리·감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특정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등의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이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내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⁴⁾

<제22대 국회 정당 현수막 내용 규제 관련 법안 현황>

의안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자	내 용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2212827)	2025.9.9.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2212580)	2025.9.1.	정당현수막을 일정한 요건을 가진 정당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현수막 표시 제한 및 위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조치근거 등을 마련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술의원, 2212131)	2025.8.12.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의 경우, 인종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2213975)	2025.11.6.	허위사실을 기초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시장등이 현수막의 제거나 조치명령을 하도록 함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2212925)	2025.9.11.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 포함으로 판정한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수막의 제거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대법원 2023추5061, 2023추5146, 2023추5177 등

4) 박소영 기자, “정당의 혐오 표현 현수막, 옥외광고물법으로 규제 못 해... 재검토해야”, 2025.04.22. 2025.11.03. 최종확인, 한국일보.

의안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자	내 용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2212833)	2025.9.9.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2212132)	2025.8.12.	정당현수막 설치 내용에 관하여 「정당법」에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정당 현수막에 인종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2212089)	2025.8.11.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의 사실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함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2211559)	2025.7.18.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고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특히 현행법 제2조의2는 법 적용시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나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별 설치 개수, 장소, 규격, 기간, 표시·설치 방법 등 위반을 주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임.⁵⁾

또한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정당활동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국회에서의 입법정책적 결정을 바탕으로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⁶⁾⁷⁾⁸⁾

5) 참고 1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25년 1분기)]

이에 개정안들은 인종혐오 등 차별적 표현을 포함하는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당 현수막의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제22대국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운영 기준, 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한 운영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 기준을 마련했는데 가급적이면 현대적인 정당정치,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특별히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면 다 풀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7) 제22대국회 제4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8.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제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 규제하는 부분은 정당활동의 자유 그다음에 규제의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 (중략) ...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된다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제22대국회 제429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09.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존경하는 모경중 위원님과 채현일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자칫 정당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행 법률만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는 다소 곤란하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규제 대상이나 방법·범위 등에 대해 정당활동 보장과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신중하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규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저희들 선관위 스스로가 먼저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명령이라든지 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저희들 선관위는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법 37조에 나와 있는 해당 내용, 정당이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 선관위에서는 지금 현행 법률로는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 제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입법 법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입법이 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들은 유사한 입법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논의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당 현수막의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손솔의원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31)」의 의결을 전제로 정당 현수막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에 따르도록 「옥외광고물법」에 명시하고, 금지하는 내용과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에 규정함.

반면 **고민정의원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27)」의 의결과는 별개로 금지광고물의 내용을 「옥외광고물법」에 명시하되,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내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을 통해 다루도록 함.

둘째, 인종, 국적, 민족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적용 대상 **광고물의 범위**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손솔의원안**은 「정당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정당 현수막만을 대상으로 하여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나, **고민정의원안**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관련 표현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 현수막 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물등에 대하여도 효과를 미치게 됨.

셋째, 정당 현수막에 관한 **관리 주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손솔**

의원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31)」의 의결을 전제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되는 내용을 표시한 정당 현수막에 관하여 시정명령, 행정대집행, 설치 금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나, 고민정의원안은 시장등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정당 현수막의 내용에 혐오표현 등을 금지하려는 본래의 입법 취지가 달성되기 위하여는 「정당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31, 제12827)」의 심사경과를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들에 대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로서 적절한 입법조치라는 입장이나, 고민정의원안의 옥외광고심의회에 관한 내용은 분쟁의 우려가 높은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고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법률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경기도는 손솔의원안에 대하여 「정당법」 개정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혼선이나 행정력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50

참고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25.1분기)

구분	시군구	정비실적(개)								민원(건)			
		소계	개수 위반	금지 장소 위반	규격 위반	설치 기간 위반	표시 방법 위반	설치 방법 위반	기타	소계	신문 고	유선	방문 등
계	229	33,045	2,445	2,114	189	22,694	2,264	1,890	1,449	10,231	6,103	3,068	1,060
서울	25	5,783	545	305	16	3,921	159	448	389	2,756	1,700	505	551
부산	16	1,962	108	337	13	1,395	33	37	39	660	448	206	6
대구	9	2,891	44	181	0	2,435	103	115	13	278	155	123	0
인천	10	2,375	67	141	6	1,766	188	132	75	401	274	122	5
광주	5	771	0	32	0	373	71	197	98	334	240	78	16
대전	5	755	3	18	0	647	79	2	6	477	301	113	63
울산	5	418	30	106	20	191	52	14	5	222	103	101	18
세종	1	445	3	8	0	253	90	46	45	340	202	121	17
경기	31	7,762	981	228	19	5,099	858	277	300	2,463	1,358	891	214
강원	18	1,196	48	58	3	789	115	120	63	342	196	46	100
충북	11	658	19	46	11	475	64	8	35	306	215	84	7
충남	15	1,938	187	31	0	1,546	104	19	51	118	104	14	0
전북	14	1,094	53	345	55	392	62	177	10	309	92	217	0
전남	22	1,253	97	109	39	772	57	143	36	107	92	15	0
경북	22	1,471	113	95	7	894	120	33	209	320	102	199	19
경남	18	2,181	146	67	0	1,677	108	114	69	777	507	228	42
제주	2	92	1	7	0	69	1	8	6	21	14	5	2

※ 자료 : 행정안전부